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10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26. 5. 15.(금) 10:00

장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김종철 위 원 장
고민수 위 원
류신환 위 원
최수영 위 원
이상근 위 원
윤성욱 위 원 (6명)

불참위원 : 없 음

제10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10시 00분 개회】

1. 성원보고

- 김종철 위원장
 - 성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우혁 의안·정책관리팀장
 - 위원 6인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이우혁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김종철 위원장
 - 2026년도 제10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반갑습니다. 매주 이어지는 강행군 속에서 우리 사회 공론장을 지키기 위해 성심을 다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방송미디어는 우리 공동체의 건강한 소통을 이어주는 신경망입니다. 오늘 심의할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 선정계획과 방송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은 우리 방송미디어가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결과 또한 미디어 대전환의 파고 속에서 우리 위원회의 방송미디어 정책 결정에 중요한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오로지 주권자 국민과 법치 행정의 원칙을 기반 삼아, 위원님들의 해안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 전차 회의록 확인

○ 김종철 위원장

- 먼저 2026년도 제7차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과 함께 제8차, 제9차 회의의 회의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후 혹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4-1. 국회 요구 회의록·속기록 제출 의결

○ 김종철 위원장

- 다음으로 2026년도 제5차 회의의 비공개 회의록과 속기록에 대한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필요한 위원회 회의 운영 규칙 제20조 제3항에 따라 개인의 인적 사항이나 발언 위원의 성명 등을 음영처리한 후 자료를 열람형식으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하신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김종철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과 <보고안건> 2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장내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돈)

안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 선정계획(안)에 관한 건 (2026-10-419)

○ 김종철 위원장

- <의결사항 가>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 선정계획(안)에 관한 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 **곽동엽 행정법무담당관**

-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 선정계획(안)에 관한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의결주문입니다.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이사 임명제청,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임명을 위해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 선정계획(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개정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하 “방송3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공영방송”이라 한다) 이사 선임을 위해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 선정계획(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3> 경과사항입니다. 공영방송 이사·사장 선임절차 개선 및 방송의 보도·편성 자율성 제고를 위한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2025년 8월과 9월에 공포·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방송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에 따른 규칙 제정(안)이 올해 5월 8일에 의결되었으며, 해당 규칙들은 5월 13일에 공포·시행되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4> 선정계획(안)입니다. (1) 선정 대상 추천단체입니다.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를 추천하는 각각 5개의 단체, 총 15개 단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세부 선정 단체로는 한국방송공사는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3개, 변호사 단체 2개, 방송문화진흥회는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3개, 변호사 단체 2개, 한국교육방송공사는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3개, 교육 관련 단체 2개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2) 선정 추천단체 자격요건입니다. 선정 대상 추천단체는 (법인의 경우) 설립된 지 5년이 경과된 비영리법인이거나, (법인이 아닌 경우) 설립된 지 5년이 경과하였으면서 연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회칙 등이 있는 단체여야 합니다. 선정된 추천단체가 해산, 제출자료의 허위 기재, 이사 추천과 관련된 중대한 법령위반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선정을 존속시킬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인정될 때에는 해당 추천단체의 선정을 즉시 취소하게 됩니다. (3) 선정 추천단체 역할입니다. 이 단체들은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게 됩니다. 한국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와 관련 이번에 선정되는 3개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가 합의하여 이사 2명, 변호사 단체가 각각 1명씩 2명을 추천하여 각 방송사마다 4인을 추천하게 되며,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이번에 선정된 3개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가 합의하여 이사 1명, 교육 관련 단체가 각각 1명씩 2명을 추천하여 총 3명의 이사를 추천하게 됩니다. 6쪽 결격사유 검증입니다. 추천 이사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추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명되어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임명된 것으로 간주됨을 고려하여, 선정된 추천단체는 “방송3법”에 규정된 이사의 결격사유가 없는 이사 후보자가 추천될 수 있도록 추천 전 사전 검증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최종 이사 추천 시 검증절차 및 관련서류 일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함께 제출해야 하며, 추천된 후보자가 결격사유로 임명 취소되는 경우, 차기 추천단체 선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절차 등 공개 사항입니다. 선정 추천단체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와 방식,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이사 추천 시 공개해야 합니다. 이 또한 방송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사 추천 기준과 절차, 공모 및 의견수렴 과정, 추천 이유 등도 이사 추천 시 공개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선정 유효기간입니다.

다. 다양한 단체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 기회 담보를 위해 선정된 추천단체의 이사 추천권은 당해 이사회 구성 시까지 유효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방송3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에 따라, 해당 추천단체가 추천한 이사가 결원된 경우 보궐 이사를 다시 추천할 수 있습니다. 다음 추천 효력입니다. 선정된 추천단체 이사 추천 효력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한 이사 추천기간의 마지막 날에 일괄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요청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방송3법에 따른 임명 간주규정(추천일로부터 14일 경과 시)의 효율적 기산을 위한 목적입니다. <나> 선정 심사 주요내용입니다. 심사 기본방향입니다.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를 공개모집하고 신청단체를 대상으로 심사를 추진하고, 최초 공개모집 기간 내 신청단체 수가 방송3법에 따른 추천단체 수에 미달할 경우, 공개모집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심사의 공정성·투명성·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단일 선정 심사위원회가 신청단체 전체를 심사하여, 평가의 일관성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장 주도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무처가 심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 (2) 심사위원회 구성입니다. 방송 및 교육에 관한 전문성, 지역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 등을 감안하여 공영방송 이사를 임명·위촉하도록 규정한 “방송3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였습니다. 방송·미디어, 법률, 경영·경제·회계, 기술, 시청자·소비자 등 5개 분야 전문가 9~14인으로 구성하고,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경우에는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 심사위원회와 동일하게 구성하되, 교육 분야(2인)를 추가하게 됩니다. 다음 9쪽입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절차입니다. 심사위원장은 외부 전문가 중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들과 협의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선정하고, 심사위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이 심사위원 위촉기준 및 결격사유에 반하지 않는 전문가를 추천하여 분야별 5배수 이내 후보군을 마련하게 됩니다. 후보군 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들과 협의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심사위원 위촉기준입니다. 경력은 각 분야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자, 자격은 전문자격증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종사한 자, 교수는 부교수 이상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심사위원 결격사유입니다. 신청단체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 선정심사 신청서류 작성에 관여했거나 관여하려는 자, 2023년 1월 1일 이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또는 현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입니다. (3) 심사위원회 운영입니다. 심사위원회 임무입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 선정계획」에 따르되, 세부 평가항목별 세부심사기준 등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합니다. 다음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 선정계획」 및 세부심사기준 등을 토대로 신청단체의 제출서류 검토 및 의견청취 결과 등을 반영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심사위원회 운영방식은 심사위원 전원이 참가하되, 심사위원장은 점수평가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이 현재 정관상 임원 또는 상임이사 이상의 임원으로 소속된 학회 또는 단체가 추천단체 선정에 신청한 경우, 동 심사위원은 해당 학회 또는 단체에 대한 심사평가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심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필요시 신청단체 제출서류에 대해 추가 보완 등 요청 및 신청단체 대표자 등으로부터 의견청취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심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의 속기록·심사의 결서는 보관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심사위원회 운영일정은 1일차는 세부심사

기준 등 의결 후 신청단체 제출서류 검토 및 심사를 하고, 2일차에는 심사를 계속하고, 필요시 의견청취와 함께 심사결과를 의결하게 됩니다. 심사위원회가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위원회의 의결로 운영일정 연장이 가능합니다. 필요시 의견청취 관련해서는 신청단체의 제출자료 및 계획 등 심사위원회가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의견청취를 실시하게 됩니다. 의견청취는 별도 배점은 없고 심사평가에만 반영하게 됩니다. 신청단체의 대표자 등을 대상으로, 심사위원회 심사평가 기간 내 실시하는데 불가피한 경우 심사위원회의 사전 양해를 얻어 대리인 참석도 가능합니다. (4) 심사항목 및 배점입니다. “방송3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은 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한국교육방송공사별 이사 추천단체에 대한 심사사항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는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인 경우에는 방송미디어 관련 학술발전 기여내역을 보고, 같은 2개 방송사라도 변호사 단체는 사회공헌 등 공익적 활동내역을 보게 됩니다. 기타 <1>, <2>, <4>는 같은 항목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경우에는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는 한국방송공사 및 방송문화진흥회와 같이 방송미디어 관련 학술발전 기여내역을 보고, 교육 관련 단체는 별도로 교육의 공공성 관련 활동내역을 보게 됩니다. 다음 세부 평가항목입니다. 기본방향입니다. “방송3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에 따른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별 심사사항을 기준으로, 단체의 성격·유형 등을 고려하여 세부 평가항목을 차별화했습니다.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는 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추천단체 중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에 대해 4개 사항을 심사하게 됩니다. 활동기간 및 회원수 등 단체의 대표성, 단체의 전문성·책임성 관련 활동내역, 방송미디어 관련 학술발전 기여내역, 그 밖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심사에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변호사 단체는 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단체 중 변호사 단체에 대해 4개 심사사항을 심사합니다. 그 아래에 있는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 관련 단체는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추천단체 중 교육 관련 단체에 대해 4개 심사사항을 심사합니다. 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단체에 교육 관련 단체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배점입니다. 세부평가항목별 배점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 선정계획”에 따르되, 세부심사기준 및 그 배점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고, 단체의 대표성, 단체의 전문성 및 책임성, 방송미디어 관련 학술발전 기여내역, 교육의 공공성 관련 활동내역, 공익적 활동내역 등 공영방송별 추천단체의 성격을 고려한 법정 심사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한국교육방송공사인 경우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는 <3> 방송미디어 관련 학술발전 기여내역을 만점 1,000점 중 400점으로 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 변호사 단체는 <3> 사회공헌 등 공익적 활동내역을 400점으로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경우에는 교육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 관련 단체는 교육의 공공성 관련 활동내역을 1,000점 중 400점으로 해서 가장 비중을 높게 심사할 예정입니다. 다음 15쪽입니다. 평가원칙 및 방식입니다. 평가원칙은 심사위원장을 제외한 심사위원 전원이 신청단체 제출서류 및 의견청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세부평가항목별로 심사하고, 평가방식은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는데 정량평가는 활동기간, 회원수, 방송 또는 언론 관련 연구 및 활동실적 등 객관적·정량적인 기준에 의한 평가점수를 반영합니다. 정성평가는 수, 우, 미, 양, 가로 등급을 부여한 후 각 등급별로 평점을 환산하여 부여하게 됩니다. 실적자료는

정량평가에서 주로 사용되는데 최근 3년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정성평가 점수 집계 시 세부평가항목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는 제외하게 됩니다. 평가결과입니다. 심사위원장을 제외한 심사위원 전원은 채점표에 따라 개별 평가 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무처에 평가 결과를 제출하고 서명합니다. 심사위원회는 개별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종합하여 추천단체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하고 모든 심사위원에게 심사결과를 공개합니다. 심사위원회는 평가결과 최고 득점순으로 이사 추천단체를 선정·의결하게 됩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기타 고려사항입니다. 심사의 일관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 및 한국교육방송공사 각각의 이사 추천단체로 복수 지원을 허용했습니다. 최종 선정은 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를 심의·의결하여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추가 공개모집 실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 공개모집 기간 내 신청단체 수가 “방송3법”에 따른 추천단체 수에 미달할 경우, 공개 모집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사 중복 추천 방지 사항입니다. 선정단체가 다른 추천주체와 동일 이사 후보자 추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최종 추천 전 해당 이사 후보자의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했으며, 이와 관련 각 추천주체는 동일 이사 후보자 중복 추천 등을 대비하여 예비 후보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5> 추진일정입니다. 이번 달 4주까지 설명회 개최 및 추천단체 공개 모집을 해서 5월 26일 오후 2시까지 응모를 받습니다. 그리고 5월 5주에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 선정에 관한 건」을 의결합니다. 그리고 6월 26일 추천단체 공영방송 이사 후보자 추천을 이날까지 받을 예정입니다. 세부 일정은 위원회 내부 사정 및 추천단체 추천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별지]로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 선정계획(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 김종철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고민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민수 위원

- 여러 번 이 안건을 봤는데 그때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여서 또 몇 가지 질문과 의견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6쪽 결격사유 검증입니다. 검증의 주체로 선정된 추천단체가 검증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 당구장 표시를 보면 “추천된 후보자가 결격사유로 임명·취소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추천단체에서 검증을 거치고 나서 그다음에 또 결격 여부에 대한 검증이 있다는 것을 이 내용으로부터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후보자에 대한 재차 결격사유 검증은 어디서 누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곽동엽 행정법무담당관

-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종 이사 추천할 때 추천명단과 함께 제3자 정보제공 동의나 세부 내용 자체에 대해서 추천된 이사 후보자가 추천단체에도 제공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도 제공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학회나 추천단체는 행정정보망을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선에서 검증하는데 예를 들어 저희가 검증했는데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그 추천

단체에 대해서는 페널티(penalty)를 물리겠다는 취지입니다.

○ 고민수 위원

- 그러니까 결국에는 추천단체에서 결격사유를 검증하고 다음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결격사유 여부를 재차 검증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지요?

○ 콕동엽 행정법무담당관

- 예, 이중 검증시스템입니다.

○ 고민수 위원

- 여기서는 검증의 주체가 불분명해서 그 부분을 하나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다음에 7쪽 추천 효력과 관련해서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마지막 날에 일괄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요청함”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는데 제목이 ‘추천 효력’이지 않습니까?

○ 콕동엽 행정법무담당관

- 예.

○ 고민수 위원

- 그러면 ‘추천 기간의 마지막 날에 일괄 이루어지도록 함’ 이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추천의 효력 자체를 명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도록 함’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의견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콕동엽 행정법무담당관

- 단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일단 협조 문구를 썼습니다.

○ 고민수 위원

- 이것은 저희가 내용을 정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 콕동엽 행정법무담당관

- 예.

○ 고민수 위원

- 그러니까 추천의 효력은 이루어지도록 하라고 우리가 명시적으로 정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 콕동엽 행정법무담당관

- 예.

○ 고민수 위원

- 그러니까 협조를 요청하면 행정적 처리 차원에서는 요청할 수 있지만 ‘추천의 효력은 일괄

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이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 **곽동엽 행정법무담당관**

- 문구를 그런 식으로 수정해서 공모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민수 위원**

- 마지막으로 16쪽, 이 부분은 의문이 드는데 중복지원 허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각각의 이사 추천단체로 복수 지원을 허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질문이 복수로 지원을 허용하면 추천단체로 3개 사업자와 관련해서 다 중복적으로 선정될 수도 있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지,

○ **곽동엽 행정법무담당관**

- 개념적으로 그렇습니다.

○ **고민수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종철 위원장**

- 감사합니다. 최수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최수영 위원**

- 8쪽을 보시면 심사위원회 구성(안)이 있습니다. 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 뒤에 이어서 한국교육방송공사에 분야가 있는데 분야를 보면 법률이나 경제·경영·회계, 시청자까지는 확실하게 구분되는 것 같은데 방송과 미디어를 어떻게 정의했는지, 기술을 또 어떻게 정의했는지, 소비자의 정의는 어떻게 됐는지 분야의 정의인 것이지요. 지금 이 부분이 정의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 **곽동엽 행정법무담당관**

- 저희가 기존 재허가나 재승인할 때 그런 기준에 맞춰서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방미통위 위원님들 간 논의과정에서 그것은 자연스럽게 합의나 협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최수영 위원**

- 그러니까 분야를 고지할 때 방송은 어떤 기준으로 하고, 미디어는 어떤 기준으로 하고, 기술은 어떤 기준으로 하고, 소비자는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신청자들에게 어떤 분야로 정확하게 정의가 되느냐, 제 질문은 그런 것이지요.

○ **곽동엽 행정법무담당관**

- 지금까지 기존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는….

○ 최수영 위원

- 그 기준으로 적용됐다는 것이지요?

○ 광동엽 행정법무담당관

- 예.

○ 최수영 위원

- 알겠습니다.

○ 김종철 위원장

- 기존에 저희가 담당해 온 재허가·재승인과 관련된 심사 관행들이 형성되어 있고, 또 방송 미디어는 저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나 방송법 등의 관련 법령에 의해서 기본적인 사항들은 지침이 주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시청자 또한 방송법상의 중요한 공적책임의 핵심 기준이 시청자라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소비자도 헌법상의 소비자 운동보호와 관련된 조항이나 관련 헌법을 구체화하는 법률이나 법령에서 기본적으로 소비자나 소비자단체 등에 대한 개괄적인 정의가 있고, 또 그동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전신들에서 활용되어온 심사기준들이나 관련 관행들을 참조해서 저희들이 협의해서 정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추가적인 질문 부탁드립니다. (……) 저희가 간담회 등을 통해 열린 토의와 실무진과의 검토를 거친 사항들이 많이 반영되어서 계획안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전체회의에서는 말씀을 조금 아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조금 더 분명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일부 자구를 위원장이 최종적으로 확인해서 수정하는 것을 전제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이 안건 가결에 이어서 저의 소감을 한마디 덧붙이고자 합니다. 지난번 방송3법 관련 시행령, 규칙 의결부터 오늘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 선정계획(안) 확정까지 민주적 기본질서의 중추 요소인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로 세우기 위한 대장정에 마침표가 하나씩 찍히고 있습니다. 건강한 공론의 장을 지키기 위한 우리 위원회의 첫 선정 계획인 만큼 사무처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단체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나. 「방송법」 위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 (2026-10-420~421)

○ 김종철 위원장

- <의결사항 나> “ 「방송법」 위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희수 방송지원정책과장

- <1> 의결주문입니다. <1안>입니다. ‘주식회사 와이티엔과 주식회사 연합뉴스티브이는 2026년 7월 31일까지 「방송법」 제20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의 위반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2안>입니다. 주식회사 와이티엔과 주식회사 연합뉴스티브이는 2026년 7월 31일까지 「방송법」 제20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의 위반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위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방송법」 제18조에 따른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입니다. <2> 제안이유입니다. 「방송법」 제20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장추천위원회 설치·운영 의무를 위반한 주식회사 와이티엔과 주식회사 연합뉴스티브이에 대하여 같은 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3> 주요 내용입니다. <가> 경과사항입니다. 2025년 8월 26일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사장추천위원회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하는 방송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방송법」 부칙 제3조에서 정한 기한인 3개월이 도과함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보도PP 2개사에 사장추천위원회 설치·운영 추진 주요 경과 및 향후 계획 자료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고, 보도PP 2개사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2026년 2월 방미통위는 보도PP 2개사에 사장추천위원회 설치·운영을 재차 촉구하였고, 이어 「방송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조치 검토 예정임을 공문으로 통지하였습니다. 4월 17일 보도PP 2개사에 「방송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추진계획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같은 날 양사에 시정명령 처분을 사전통지하였습니다. 4월 24일과 27일 양사는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의견서 제출 마감일인 4월 27일 (주)연합뉴스티브이 노사는 사추위 구성안에 합의하였습니다. 5월 12일 방미통위는 양사 대표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청취를 실시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위반 내용입니다. 보도PP인 (주)와이티엔과 (주)연합뉴스티브이는 개정 「방송법」 제20조에 따라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관과 운영규칙으로 정하고 사장추천위원회를 통해 대표자 후보자를 추천받아 법 시행일인 2025년 8월 26일부터 3개월 이내 대표자를 임명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방송법」 위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사업자 주요 의견입니다. (주)와이티엔은 사장추천위원회 제도의 구조적 특성상 사업자 단독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하여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성실한 협의에도 합의 불성립만을 이유로 사업자에게 단독 책임을 귀속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것은 자기책임 원칙에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교섭 경과와 교착 사유 등을 참작하여 시정명령 발령 여부를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주)연합뉴스티브이는 노사 및 주요 주주 간 이해관계 조정에 상당 시간이 소요되어 법정시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으나, 고의적인 절차 지연 또는 회피의 의도는 없었으며, 4월 27일 노사가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안에 최종 합의하였고 후속 필요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므로 자발적인 시정 노력을 참작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마>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주)와이티엔입니다. (주)와이티엔은 「방송법」 부칙 제3조에서 정한 3개월이 도과한 이후 5개월 이상 경과하였으나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하지 않아 그에 따른 대표자가 임명되지 않은 바, 현재까지 「방송법」 위반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위반행위 시정을 위한 시정명령 부과가 필요합니다. 「방송법」 개정에 따라 사장추천위원회 관련 의무가 새롭게 부과된 사실을 인지하고 방미통위의 사장추천위원회 관련 의무 이행 촉구 및 위반 시 시정명령 검토 예정 통지 등을 통해 미이행 시 상응하는 조치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나 이행하지 않았고, 방미통위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 이후에도 노사 간 교섭이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엄중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주)연합뉴스티브이의 경우에도 「방송법」 부칙 제3조에서 정한 3개월이 도과한 이후 5개월 이상 경과하였으나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하지 않아 그에 따른 대표자가 임명되지 않은 바, 현재까지 방송법 위반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위반행위 시정을 위한 시정명령 부과가 필요합니다. 「방송법」 개정에 따라 사장추천위원회 관련 의무가 새롭게 부과된 사실을 인지하고 방미통위의 사장추천위원회 관련 의무 이행 촉구

및 위반 시 시정명령 검토 예정 통지 등을 통해 미이행 시 상응하는 조치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나 이행하지 않았고, 노사가 마련한 합의안에 대한 최다액출자자의 이견 등으로 후속 절차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인바, 엄중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의결해 주시면 양사에 시정명령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종철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방송법」 위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방송법」 개정 이후 「방송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지침을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의결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무처가 보고한 안건 내 의결주문에 간담회에서의 논의과정을 반영해서 <1안>과 <2안> 복수안이 병기되어 있습니다. <1안>은 시정명령만 의결주문으로 하는 것이고, <2안>은 시정명령과 함께 향후 방송법상 시정명령 위반 시 우리 위원회가 처분을 추가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병기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 주실 때 해당 안에 대한 선택 의견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그럼,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최수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최수영 위원

- 사장추천위원회 입법 취지라든가 그다음에 법 준수 필요성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고 저도 전제하고 동의합니다. 다만, 의결주문 중 <1안>과 <2안>이 올라왔는데 <2안>에 보면 제18조에 따른 처분 부과가 명기되어 있는데 저는 이 문구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속 처분 가능성은 사실상 법률적으로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의결주문에 명기하는 것은 단순히 법률적 안내를 넘어서 중징계 가능성을 제재요구하는 것으로 비취질 우려가 상당 부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정명령의 취지가 원칙적으로는 사업자들에게 자율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는 단계라고 보는데 제18조의 처분을 거기에 명기하는 것은 그 이후 이행 여부와 그다음에 시정노력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한 번 고려한 후에 판단하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것을 한꺼번에 넣는 것은 과하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단계를 한 시정명령 안에 넣는 것은 행정원칙이나 비례성 측면에서 봤을 때 너무 과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단계도 맞아야 하고 강도도 맞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시정명령 주문에 제18조의 처분 가능성까지 명기하기 시작하면 향후 발생하는 다른 방송사업자들에 대한 시정명령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또 하나의 선례를 남긴다는 측면에서 우리 위원회가 이 부분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단계 사이에 기능적 구분이 약화되는 것은 향후 위원회의 여러 가지 절차들이나 행정적으로 봤을 때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법률상 당연히 개정된 제18조 후속조치 가능성은 향후 별도의 절차에서 판단하고, 이번 의결은 시정명령 그 자체만 하는 것이 신중하고 균형 잡힌 것이라고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1안>으로 처리해 주시기를 강력히 말씀드리고, 그것이 우리의 법 정신이자 책임주의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중철 위원장

- 최수영 위원님께서서는 의결주문 <1안>을 지지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고민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민수 위원

- 저는 존경하는 최수영 위원님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생각을 갖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표현에서는 '법 위반행위'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위법행위입니다. 불법 상황이 무려 5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 점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봅니다. 방송사업자들은 방송법에서 정한 목적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사업행위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방송법에서는 방송이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민주적 여론을 형성하고 국민 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법행위는 방송법에서 목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장치로 입법자들이 만든 사장추천위원회라는 것을 사실상 5개월 동안 형해화시켰고, 의견청취 과정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이 위법 상태에 대한 인식이 매우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방미통위가 새롭게 출범하고 나서 방송법에서 정한 목적을 집행한다고 하는 강력한 시그널(Signal)을 사업자들에게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법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이 집행되고, 다만 사업자들과 관련된 진흥 관련된 업무는 또 별개의 축으로서 우리가 열심히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사업자들에게 강력한 처분을 예고했다고 해서 이것이 완벽하게 규제 일관도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2안>을 찬성하는데 최수영 위원님께서서는 이러한 처분이 한 번 이루어지게 되면 이것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반복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우려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불법행위에 대한 판단은 개별적·구체적 사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법 원칙입니다. 그래서 한 번 이러한 처분을 우리가 했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할 것이라는 것은 우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제18조에 따른 처분을 우리가 알려주는 것은 강력한 법 집행 의지를 보이는 것이고, 또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이런 일이 후속조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준법의식을 높일 수 있고, 한편으로는 예측 가능성·투명성·법 집행의 엄정성을 알려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는 점에서 저는 <2안>을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김중철 위원장

- 고민수 위원님께서서는 <2안>을 선택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상근 위원

- 의견청취라고 표현합니까? 의견청취를 듣고 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이 노든 사든 약간의 양보가 필요한데 완전히 평행선을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고민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송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또 (주)와이티엔과 (주)연합뉴스티브이 같은 경우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상법」도 있어서

정말 애매모호한 사항이라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 노사가 서로 양보하는 안을 이끌어서 도출해야 하는데 도출하는 해안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1안>으로 하고 다음에 혹시 하게 되면 그때 조금 더 상세하게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종철 위원장**

- 이상근 위원님 <1안>에 대해서 지지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류신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류신환 위원**

-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세 분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대체로 취지는 공감합니다. 의견이 <1안>, <2안>이 나뉘어져 있기는 합니다만 이 법 위반상태를 사업자들이 빠르게 시정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가 명확하게 메시지를 주어야 한다는 의견에는 우리가 다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명확하게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으면 그 이후 조치에 대한 의사표시를 내는 <2안>이 기본적으로 괜찮다고 생각되지만, 이 건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의견청취 과정에서 들어봤을 때 (주)연합뉴스티브이와 (주)와이티엔과 상황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의견청취를 해서 확인했습니다만 (주)연합뉴스티브이의 경우에는 노사 간 사추위 구성에 관해 합의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정관 규정 개정이나 이후 주총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지 않을까, 또 당사자들도 그렇게 의견을 진술했기 때문에 일단 진행이 예상되는 과정입니다. 반면, (주)와이티엔은 아직 절차 진행에 진입하지 못한 단계에 있고, 의견이 많이 대립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동안 법 개정 이후 그리고 우리 위원회가 계속적으로 이행을 촉구한 과정에도 나아지지 않는, 상황이 변화가 되지 않아서 양자를 조금 다르게 취급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취지에서 (주)연합뉴스티브이에 대해서는 <1안>을 적용하고, (주)와이티엔에 대해서는 강하게 이행을 촉구하는 취지에서 단서가 붙은 <2안>으로 하는 안을 절충안으로 제시해볼까 합니다.

○ **김종철 위원장**

- 류신환 위원님께서서는 당사자별로 사정을 구체적으로 엄밀히 평가해서 의결주문을 다르게 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연합뉴스티브이의 경우에는 <1안>, (주)와이티엔의 경우에는 <2안>으로 하는 절충안을 주셨습니다. 윤성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윤성욱 위원**

- 우선 저도 의견청취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고 결정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주)연합뉴스티브이와 (주)와이티엔의 의견청취 결과, 왜 사추위를 구성하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보니 공통적으로 최대액출자자의 권한이나 참여에 대한 문제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주)연합뉴스티브이는 1대 주주인 연합뉴스가 노사합의안을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주)와이티엔은 1대 주주인 유진이엔티가 기존의 (주)와이티엔 사추위 선례가 있음에도 절차와 방식에 있어서 변경을 가하거나 권한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주)와이티엔 같은 경우 기존에 노사가 합의한 사추위 구성과 운영 방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기준점이 있음에도 합의안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것은 저는 1대 주주의 변경이 주요 요인이

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양사 공히 1대 주주의 문제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방송법 제20조 제2항, 제3항은 보도전문채널의 사장추천위원회 구성과 사장의 선임과 관련된 조항으로 마련되어 있는데 이 조항은 이사회와 방송사업자를 구분하고 있고 이사회는 복수로 추천된 사장 후보자 중에서만 사장을 임명하도록 이사회의 권한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단독으로 사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고, 교섭대표 노조와 합의를 통해 사추위를 구성하고 사추위를 통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마련하고 있어서 이 조항은 다 아시겠지만 방송의 독립성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와 주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조항을 들여다보면 이사회, 방송사업자, 노조의 권한과 역할이 엄격히 구분되어 있고 이 원칙을 우리는 정확하게 먼저 전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정사항과 관련된 제 의견은 방미통위 입장에서는 방송법 제20조에서 정한 원칙에 맞게 공정하고 정확하게 법 집행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찌 됐든 이 조항에서 시정명령의 대상은 방송사업자이고 사추위의 설치·운영의 책임주체도 방송사업자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고, 또 방송법이 정한 규율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저는 예외 없이 적용하는 것이 향후에도 사업자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길이라고 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1안>과 <2안>에 큰 차이를 부여하셨는데 저는 <1안>과 <2안>의 내용상 큰 차이가 있는가에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결국은 제18조에 따른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없다를 명시하는 것인데 이것을 명시하느냐, 명시하지 않느냐에 따라 규제의 강도가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앞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시정명령을 위반한다면 2단계 조치로 당연히 제18조에 의거해서 제재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당연한 결과를 고지해 주는 것에 대해 우리가 크게 의미를 부여해야 하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당연한 결과를 시정명령서에서 정확하게 집행을 한다는 원칙을 표명하는 것이 명확해 보입니다. 또 앞에 위원님들께서도 혼란을 겪고 있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혼란을 겪을수록 절차대로 집행될 것임을 정확하게 예고해 주는 것이 오히려 사업자들에게 혼란을 줄여주는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제가 <2안>에 동의하지만 지금 의견들이 꽤 갈려 있어서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2안>에 동의하면서 사무처에도 우리가 오늘 어떤 결정을 하든 시정명령을 위반한다면 제18조에 의해 처분을 내려야 하고, 그 처분은 허가 취소가 될 수도 있고 광고 중단이 될 수도 있고 허가 기간 단축이 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사무처에 요청사항은 70일 후에 시정명령을 어긴 사업자에게 광고 중단을 포함해서 방송법 제18조를 통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추후에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김종철 위원장

- 윤성옥 위원님께서는 원칙적으로 <2안>을 지지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논의된 바에 대해서 혹시 추가 의견 있으십니까? (……) 그럼, 제가 위원의 자격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성옥 위원님이 주신 의견, 그리고 최수영·고민수 위원님이 주신 의견들과 저희가 시정명령에 어떤 내용을 담느냐에 따라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부분들과 관련해서 법상으로 시정명령 이후 방송법 제18조의 추가적인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1차 시정명령 이후 이 처분을 바로 당연히 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재량으로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정명령 1차가 나간 이후 그것이 지켜지지 못한 사정에 충분한 합리성이 있다면 예를 들어 저희가 기간을 정해서 시정명령을 하고

있는데 그 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혹은 법·제도가 정한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에 어쩔 수 없이 이 시정명령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도 당연히 시정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바로 제18조 제4항의 처분을 강력하게 부과해야 한다는 것은 법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청으로서 우리 위원회는 1차 시정명령 이후 여러 가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2차 시정명령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추가적인 처분을 할 수도 있는 재량이 법에 의해 부과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1안>과 <2안>은 명백히 구분됩니다. <1안>은 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류신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주)연합뉴스티브이와 (주)와이티엔의 경우 저희가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명백한 사실 판단이나 향후 전망에 있어서 중대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주)연합뉴스티브이는 노사 간에, 양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미 있습니다. 반면, (주)와이티엔은 전혀 없고 거기에 대한 향후 전망도 노사 간 합의의 자리에 아예 앉지 않고 있는 아주 특별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연합뉴스티브이는 그런 취지에서 그 합의에 따른 이행의지를 의견청취 등에서 구체적으로 이사회 개최 의사, 정관 개정 의사 등을 밝혔습니다. (주)와이티엔의 경우는 없습니다. (주)연합뉴스티브이의 경우 현재 이 계획이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법·제도가 정하고 있는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다 보니까 저희가 설정한 기간을 맞추지 못할 가능성이 일부 존재합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노사 양측이 아닌 엄밀히 말하면 간접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제3자에 해당하는 최다액출자자가 연합뉴스입니다. 이 연합뉴스가 과반 주주도 아닌 거의 30% 정도의 과소 주주를 가지고 최다액출자자라는 이유로 지금 과도하게 무리한 요구를 방송법이 정하고 있는 취지에 어긋나게 하고 있어서 장애가 생긴 것이지, 직접 당사자들인 노사는 이미 합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 중대한 사실이고, 저희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구체적으로 실효적으로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엄격하게 구별되고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법」의 기본원칙에 따르면 저희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은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처지, 상황, 의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비례원칙, 평등원칙, 자기책임의 원칙 등을 적용해서 행정처분을 해야 할 의무가 행정청인 우리 위원회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1차적으로 이 두 가지 중요한 차이점을 구별해서, 「방송법」의 입법취지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시정명령을 하되, 향후 조치에 있어서는 노력을 성실히 이행한 당사자와 그렇지 아니하고 향후 전망도 어두운 당사자를 구별해서 향후 우리가 더 엄격한 조치를 할 수 있음을 예시해서 의결주문에 표시하는 것이 그런 충분한 시정명령의 효과를 실효적으로 만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1안>과 <2안>을 구별할 의미는 분명히 있고, 제가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주)연합뉴스티브이의 경우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의 자율적인 노력 여하를 지켜보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더 엄격한 시정조치를 강력하게 예고할 필요성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행정법의 기본원칙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반면, YTN의 경우 그런 사정이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오히려 자율적인 합의를 강력하게 저희들이 유도해야 할 책임을 부과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재량을 가지고 있지만 이 사안의 경우 지금까지의 경과를 볼 때 예를 들어 고민수 위원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이미 법 시행 후 5개월이 넘어서 거의 6개월이 되고 있는 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거의 70일에 해당하는 시정기간을 별도로 또 추가로 준다는 점에 있어서 충분히 당사자의 입장을 오히려 과도하게 고려했다는 비판

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배려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 이런 배려에도 불구하고 법 위법 상황을 치유하려는 노력을 실효적이고 구체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한다면 저희들은 추가적인 시정명령을 고려하지 않고 바로 「방송법」 제18조가 예정하고 있는 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것임을 예고함으로써 자율적인 합의에 도달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류신환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처럼 결론적으로 (주)연합뉴스티브이의 경우 <1안>에 의해 시정명령을 기간을 설정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향후 당사자가 유효하고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도 혹여나 법·제도가 요구하는 절차 때문에 이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제2차 시정명령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여지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그런 의결 주문을 채택하는 것이 헌법과 법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주)와이티엔의 경우 강력한 후속조치를 통해 이 시정명령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강력하게 유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때문에 (주)와이티엔의 경우 <2안> 의결주문이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견들이 조금씩 나누어져 있는데 1차 토론이 끝났고, 정리하자면 「방송법」 개정의 취지에 입각해서 시정명령을 해야 할 상황이 성숙했다. 그리고 법 집행의지를 우리 위원회가 강력하게 시정명령을 통해 표방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는 전원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다만, 그 의결주문의 표현 방식과 내용에 관해서 약간의 이견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의견수렴을 더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추가 의견들을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상근 위원

- (주)와이티엔 같은 경우 예전에 사장추천위원회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을 놓고 서로 조율해야 하는데 의견청취를 들으면서 서로 하나씩하나씩 더 가져가려는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평행선을 걷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서, 혹시 이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위원장님께서 공식적인 것이 아니고 양사를 불러서 한 번 의견조율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종철 위원장

- 저희가 오늘 시정명령을 의결한 이후 이 법 취지대로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위원회가 할 수 있는 행정지도 등 그런 노력들은 최선을 다해서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의결사항과 그것들을 집행하는 의지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표명하게 된다는 점에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근 위원님, <1안>, <2안> 구분해서 분명히 차이점이 있다는 점은 공감하시리라 생각하는데 원래 의견인 <1안>에서 일부 절충안으로 의견을 모아주실 수 없는지 여쭙습니다.

○ 이상근 위원

- 의견은 <1안>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철 위원장

- 고민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민수 위원

- 저는 윤성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안>을 해도 시정명령 기간 동안 위법상태를 해소하면 제18조에 따른 처분 가능성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1안>과 <2안>은 사실상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2안>을 말씀드린 이유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사업자들이 우리가 시정명령을 기간 내 이행하지 않았다고 했을 때 또 다시 시정명령을 해 줄 것을 예측할 수 있는, 또 그렇게 바라고 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일말의 기대 가능성을 없애 주려면 제18조에 의한 처분이 뒤따를 것이라고 미리 예고해 주는 것이 이 위법상태 해소의 엄중성을 제대로 알려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제안해주신 것처럼 두 사업자가 법 위반상태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그간의 이 법 위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보여준 경과사항을 봤을 때는 약간 분리해서 의결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염려스러운 것은 이렇게 분리 처분했을 때 이런 반론이나 의문이 제기되면 이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라고 하는 우려사항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제가 혼자 계속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종철 위원장

- 고민수 위원님께서서는 절충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견을 주신 것으로 정리해도 되겠지요?

○ 고민수 위원

- 예.

○ 김종철 위원장

- 최수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최수영 위원

- 위원장님과 류신환 위원님이 나름 비례성의 원칙에 의한 솔로몬의 지혜를 내셨다고 생각됩니다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연합뉴스티브이의 노력은 어느 정도 1차적 성과를 이루었고, (주)와이티엔은 아직도 교착상태에 있고 개선의 과정이 예측되지 않는다는 것은 상황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저희가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측에 불과한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상황적 변화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별도로 적용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생각이 여전히 듭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주)와이티엔 같은 경우 방송법에 규정된 '노사가 합의하여야 한다'는 합의조항이 있는데 '합의'만 법에 규정되어 있지 '사측의 대표 구성 범위는 어떠하여야 한다'고 적시되거나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사가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다투고 있고 서로가 여기에 대해서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어쨌든 저희가 <1안>을 해도, 그다음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원회 자율적 재량과 저희의 권한에서 여기는 도저히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때 바로 후속조치로 들어가도 되는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저는 차등을 두거나 별도로 구분해서 <1안>, <2안>을 하는 것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법의 원칙적 측면에서 어쨌든 단계를 구분한다는 측면에서 이번에는 시정명령 하나에만 양쪽 모두 국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해서 저는 <1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중철 위원장

- 감사합니다. 윤성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윤성옥 위원

- 저도 다시 한번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연합뉴스티브이와 (주)와이티엔을 차별적으로 보시는 위원님들이 계신데 두 가지 동일하지 않습니까? 지금 시행 후 5개월이 되도록 위법한 상황을 이어가고 있는 것도 동일하고, 사추위를 구성하지 못한 상황도 동일합니다. 동일한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그 상황에 대해서 반영한다면 저는 자의적으로 판단할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주)연합뉴스티브이 같은 경우 (주)와이티엔보다 합의안이 있어서 덜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과반이 되지 않는 1대 주주의 주장 때문에 노사가 합의한 안이 추진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것 역시도 그렇게 가볍게 볼 상황은 아니다, 오히려 더 심각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정확하게 법을 집행해 주는 것이 일관성이나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한 번만 더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 김중철 위원장

- 윤성옥 위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절충안인 <1안>, <2안>을 당사자별로 구분하는 안을 세 분이 의견을 모아주셨고, <1안>에 대해 두 분이 의견을 모아주셨고, <2안>을 유지하시는 위원님이 한 분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6인 중 과반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6인 위원의 과반수는 4인으로 봐야 되겠지요. 그러면 아직 1표가 부족합니다.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1안>, <2안> 구별의 상대성과 또 상대적 차이를 동시에 한 번 환기시켜 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1안>, <2안>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법의 엄격한 집행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시정명령을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덧붙여서 후속조치를 병기해서 예고함으로써 더 강력한 조치를 예고해서 준수효과를 유도하겠다는 의지를 부과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데 그것은 그런 상대적인 의미를 가질 뿐이지, 그것 자체가 우리를 기속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2안>을 채택한 경우에도 2차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열려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대적 차이와 그것이 가지는 또 상대적 의미에 대해 숙고해 주시면 제가 절충안을 고민한 그런 의지에 조금 수궁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안>, <2안>이 그렇게 절대적으로 지지해야 할 사안일까, 이런 생각을 제가 감히 드립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 왜 (주)연합뉴스티브이와 (주)와이티엔을 구분해야 하는지에 대해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결정적인 차이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일련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확인된 것은 (주)와이티엔의 경우 노사 양측이 모두 자율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 보다는 법원의 판결이나 행정청의 결정에 따라 할 수도 있다는 매우 법 취지의 자율주의에 맞지 않는, 노사 합의정신에 맞지 않는 태도를 보여주었다는 점입니다. 반면, (주)연합뉴스티브이는 당사자인 노사가 이미 합의를 했습니다. 1단계 합의를 했고, 2단계 절차에 대해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했고 실천의지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법의 의결주문의 상대적 차이를 충분히 정당화시킬 수 있는 중대한 차이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좀 더 근본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주)와이티엔의 경우 최다액출자자가 바로 사측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이 교착상태와 관련된 부분들의 타개 가능성들이 현실적으로 제한적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반면, (주)연합뉴스티브이의 당사자는 이미 노사는 합의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연합뉴스라는 제3자가 오로지 최다액출자자라는 이유로 심지어는 노동자 측이 사실상 양보한 안을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최다액출자자가 합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일말 열려 있는 안입니다. 그러므로 전망이 (주)와이티엔의 경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연합뉴스티브이 건의 경우 이 사건을 방해하는 주요인이 과반주주도 아닌 소액주주이면서 오로지 최다액출자자가 과도한 주장을 해서 이 합의를 가로막고 있는 경우입니다. (주)와이티엔의 경우에는 노사 당사자가 아예 협의 단계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해서 그렇게 상대적인 의미밖에 없는 <1안>, <2안>이라면 꼭 그것을 고집할 만한 상황이 되는가, 오히려 당사자별로 구별해서 접근하시는 것이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고민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민수 위원

- 보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담회 때 윤성옥 위원님께서 제기하셨던 말씀과도 연결이 됩니다. 이것이 제20조 제2항, 제3항, 제4항을 다 위반한 것이냐는 문제 제기를 그때 윤성옥 위원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윤성옥 위원님께서 동일한 위법상태라면 동일한 처분으로 나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셔서 갑자기 든 생각인데 제20조 제3항과 관련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연합뉴스티브이의 경우에는 사업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합의를 한 것으로 그들의 합의안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 행위를 사장추천위원회가 설치됐다고 우리가 평가할 수 없는지, 제4항은 아직 정관에 기재를 못 하고 있으니까 위반됐지요. 제4항은 이행을 못 하고 있지만, 제3항은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면, 그 해석에 문제가 없다면 (주)연합뉴스티브이에 대해서는 제2항과 제4항 위반으로 분리를 할 수 있고, 또 위법의 정도에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별도 의결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일 수 있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 김종철 위원장

- 고민수 위원님 의견에 제가 시간 관계상 조금은 구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해석으로 (주)연합뉴스티브이의 경우에도 제3항은 준수했다고 단정하기에는 조금 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그것의 정도를 볼 때 제3항 기준으로는 (주)연합뉴스티브이와 (주)와이티엔 간 엄정한 위법 상황에 차이가 있다는 점은 객관적으로 분명히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윤성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윤성옥 위원

- 제20조 제2항, 제3항, 제4항을 함께 같은 대상, 동일한 하나의 대상으로 본다고 간담회 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잠정적으로 위원님들이 결론 내린 것으로 보고 제가 이견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편의상 그때는 같은 대상으로 보다가 우리가 적용할 때는 한 조항은 지켜진 것으로, 준수한 것으로 본다, 이것이 오히려 혼란을 주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일관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안>, <2안>이 절대적으로 구분된다고 보지 않고 그렇게 귀속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도 <1안>으로 선택한다고 해서 우리가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보지 않는다. 결국은 시정명령을 위반했을 때 방송법 제18조에 의해서 우리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는 이것을 명시하는 <2안>이 여전히 문제가 없고 동일하게 위법한 행위를 한 사업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이런 조치를 취했을 때 (주)연합뉴스티브이가 우리는 조금 준수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계속 의견을 고수하면 결정이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제 신념이 있기 때문에 혹시 이상근 위원님이나 최수영 위원님이 의견을 바꿔주시면 좋겠지만 만약 두 분의 의견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제가 변경할 텐데,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혹시라도 (주)연합뉴스티브이가 (주)와이티엔보다 상황이 심각하지 않다고 인지해서는 안 된다는 점, 그리고 70일 이후에 저는 실제로 광고 중단이나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실제로 사무처에 그것을 보고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오늘 결정이 <1안>과 <2안>을 구분한 것은 (주)연합뉴스티브이가 규정을 잘 준수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와이티엔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합쳐진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종철 위원장

- 윤성욱 위원님 법리적 소신에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회 의결의 필요성을 고려해서 의안에 있어서는 현재까지 정리된 바로 다수 의견에 찬동하시면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네 분이 분리 절충안에 대해서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나머지 두 분께서 또 추가 의견이 혹시 없으실지 여쭙습니다. 최수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최수영 위원

- 지금 윤성욱 위원님께서서는 절충안에 찬성해 주셨는데 저는 결과적으로 어찌 됐든 제18조의 처분을 시정명령에 명기하는 것은 그 이후 이행 여부라든가 그다음에 시정노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별도의 절차로 판단해 주어야 하는 것이 맞고, 또 이 두 단계를 한 시정명령 안에 넣는 것은 행정 원칙이나 비례성 원칙 측면에서 너무 과하다는 신념에 변함이 없어서 저는 위원장님이 절충안을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하지만 <1안>을 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철 위원장

- 이상근 위원님 추가 의견 없으십니까?

○ 이상근 위원

- 없습니다.

○ 김종철 위원장

- 그러면 이 안은 저희들이 의견을 모아 볼 때 (주)연합뉴스티브이의 경우 <1안> 의결주문으로, (주)와이티엔의 경우 <2안> 의결주문으로 하는데 방미통위 설치법 제13조 제2항이 정하는 바와 같이 “위원회의 회의는 4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원칙에 따라 4인의 찬성 의견이 모아졌으므로 그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별도로 거수를 하거나 추가 의견을 통해 직접 의견 표명할 기회를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정리된 데 대해 또 이의가 없으시면 거수는 따로 하지 않고 이 안전에 대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전은 (주)연합뉴스티브이의 경우에는 의결주문 <1안>에 따라서, (주)와이티엔의 경우에는 의결주문 <2안>에 따라서 시정명령하는 것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안전은 의결되었습니다. 금방 이루어진 의결에 대해서도 제가 또 추가로 한 말씀 기록을 남기기 위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 사항은 방송, 그중에서도 공영방송 등을 비롯한 보도전문 채널의 독립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적 가치 실현을 위해 보도전문채널의 대표자 선임절차를 규율하는 것이 개정 「방송법」의 핵심적인 입법 취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법」 시행 이후 장기간 이행되고 있지 않는 상태는 오늘 회의에서도 확인된 것처럼 법 위반, 위법행위의 지속 상태이고, 특별하게 승인 과정을 통해 방송의 자유를 향유하고 있는 방송사업자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므로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사 및 최대주주 모두 「방송법」을 성실하게 준수하고 조속하게 이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우리 위원회 전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 보고사항

가. 2024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 이행실적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 김종철 위원장

- 다음은 보고안건 순서입니다. <보고사항 가> “2024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 이행실적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훈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유와 주요 경과를 생략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재)허가 조건 이행 여부 점검결과입니다. 68개 방송사에 부가된 (재)허가 조건 총 650건에 대해 점검을 하였습니다. 이 중 623건에 대해서는 이행, 그리고 27건에 대해서는 미이행하여 이행률은 95.8%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조건 이행 현황입니다. 먼저, 방송사 비정규직 관련입니다. 비정규직 인력 현황 및 근로실태 파악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것, 비정규직 처우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그 이행실적을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점검 결과 모두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방송사업자 비정규직 현황과 비정규직 처우 개선방안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두 번째,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제고 관련입니다. 취재보도준칙, 윤리강령 등 내부 규정과 관련 교육 제도를 강화하여 운영하는 등 세부방안을 제출하고 이행실적을 제출하도록 하는 조건을 부과하였습니다. 재허가 조건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점검결과 사업자 모두 이행실적을 제출하여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방송사가 제출한 공공성 제고 세부방안 이행실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편성규약 및 편성위원회

관련하여 편성규약을 홈페이지 게시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공표하고, 편성위원회 운영 실적을 제출할 것이라는 조건을 부과하였습니다. 점검결과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민영방송의 사적 이익 추구 방지 관련하여 특수관계자 포함한 최대액출자자 관련 유리한 보도 및 홍보 등 방송이 사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관련 방송현황을 제출하라는 조건을 부과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점검결과 모두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건 미이행 현황입니다. 먼저 UHD 투자 관련입니다. UHD 콘텐츠 최소 편성비율 미준수 관련하여 '지상파 UHD 활성화 정책 방안'을 준수하고, 최소 편성비율 이상을 편성할 것이라는 조건을 부과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점검결과 SBS·지역민방 5개사는 미이행하고, 나머지는 모두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S는 UHD 콘텐츠를 35% 이상 편성하여야 하나 31.6% 편성하였으며, 지역민방은 30% 이상 편성하여야 하나 5개사가 30% 미만을 편성하여 미준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미디어 환경 변화 등에 따라 UHD 정책 관련 재허가 조건 위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정책 재수립이 필요한 상황으로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상파 차세대 서비스 정책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다만, 미이행 사업자에 대해서는 UHD 정책을 준수한 사업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행정조치가 필요하므로 행정지도를 추진하는 의견입니다. 시·군 지역 UHD 방송망 미구축 관련입니다. 이 역시 '지상파 UHD 활성화 정책 방안'에서 정하는 시·군 지역 UHD 방송망 도입 일정을 준수할 것이라는 조건을 부과하였습니다. 점검결과 KBS 지역국 8곳과 지역MBC 11개사·G1이 미이행하고 나머지는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쪽입니다. 이에 대해 사업자는 향후 순차적으로 구축할 예정이고, 도입 일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UHD 도입이 어려운 상황이며, UHD 서비스 지역 확대 예정으로, 장비 공동구매 추진 등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UHD 정책 재수립이 필요한 상황으로 지상파 차세대 서비스 정책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준수한 사업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미이행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추진하는 의견입니다. 협찬 시 고지 누락 관련입니다.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에 직접적인 효과나 효능을 다루는 경우 협찬 받은 사실을 최소 3회 이상 고지하고, 7일 이내에 프로그램명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이라는 조건을 부과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점검결과입니다. KBS는 횡수 위반 2건, 공개 지연 2건, MBC는 횡수 위반 1건, SBS는 횡수 위반 3건으로 미이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KBS와 MBC는 재방송 편집 과정에서의 실수로 협찬고지가 누락된 것이라는 의견을, SBS는 뉴스 특보로 협찬고지가 불가피하게 누락되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과거 동일한 위반이 있었던 점과 위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위반 비율이 높은 KBS는 시정명령을, 위반 비율이 미미한 MBC는 행정지도를 추진하되, SBS는 뉴스 특보로 인해 협찬고지 누락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대상에서 제외하는 의견입니다. 감사 및 감사위원 임명 미준수 관련입니다. 먼저 감사 장기 연임입니다. 방송의 공정성 및 경영의 투명성 보장을 위해 사외이사·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장기 연임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조건을 부과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점검결과 TBC가 미이행하고, 나머지는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를 최대 6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건을 부과하였으나 TBC는 특정 감사가 '07년부터 현재까지 장기 연임 중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경영 투명성 제고라는 조건 취지와 부합하지 않게 특정 감사위원이 지나치게 장기 연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시정명령을 추진하는 의견입니다. 주주 특수관계자 및 과거 경영진 감사위원 임명 관련입니다. 주주 특수관계자 및 과거 경영진이 아닌 독립적인 감사를 임명할 것이라는 조건을 OBS에게

부과하였습니다. 점검결과, OBS는 주주인 (주)경기고속의 특수관계자 1인과 OBS의 과거 경영진 2인을 감사위원으로 임명하여 미이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OBS는 최초 제출한 자료에서는 미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으나, 사무처에서 감사위원 프로필 등 추가자료 요구를 통해 위반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시정명령을 추진하는 의견입니다. 13쪽입니다. 지역방송 프로그램 투자·편성 기준 미달 관련입니다. 먼저 자체 프로그램 편성 실적 미달 관련입니다. 자체 프로그램 편성·제작 계획을 최초 허가 시 제시한 계획에 준하여 수립 및 제출하고 그 이행결과를 제출할 것이라는 조건을 KBS경인제1TV에 부과하였습니다. 점검결과, KBS경인제1TV는 자체 프로그램을 계획 대비 99.8% 편성하여 미이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위반 정도가 경미한 점과 지역국 뉴스 편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지도를 추진하는 의견입니다. 프로그램 제작비 최소 비율 미준수 관련입니다. 전년도 전체 매출 대비 프로그램 제작비 비율을 KBS 지역국은 3%, 지역민방은 14%, 지역MBC는 10% 이상 할 것이라는 조건을 부과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울산방송이 미이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 방송은 13.8%로 舊 방통위가 제시한 비율인 13%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쪽 검토 의견입니다.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이전에 위반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행정지도를 추진하는 의견입니다. OBS의 사옥 이전 계획 지연 관련입니다. '22년 재허가 시 제출한 'OBS 사옥의 인천 이전 추진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라는 조건을 부과하였습니다. 점검결과, OBS는 사옥 이전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만, OBS는 인천시가 증액 공사비 분담을 요구한 이후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사옥 이전이 여전히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5쪽 검토의견입니다. 사옥 이전은 대규모 투자 및 비용을 수반하는 상황으로 방송사 경영상황과 관계기관과의 협의 실적 등을 고려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행정지도를 추진하는 의견입니다. 주요 권고사항 준수 여부 점검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84건의 권고 사항을 부가하였고, 이 중 연도별 점검이 가능한 303건을 점검하였습니다. 미이행 현황입니다. 먼저, 과도한 배당을 지양하고 소액주주를 위한 차등 배당 등의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권고를 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원주MBC와 제주MBC가 미이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쪽입니다. 양사 모두 당기순손실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 하였으나, 배당금은 전년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주MBC는 종교단체인 2대 주주가 배당금 수익을 복지·공익 사업에 활용하고 있어, 사회 공헌의 일부로 배당을 유지하고 있다고 답변하였고, 제주MBC는 2대 주주가 전반적 회사 운영에 도움을 줄 것이라 판단하여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향후 경영 실적 및 전망 등을 고려하여 배당 규모를 결정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순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배당을 하는 것은 안정적인 방송사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회계 자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양사에 행정지도를 추진하는 의견입니다. 최다액출자자와의 자금대여 등 지양 관련입니다. 방송사의 재무 건전성을 해할 수 있는 최다액출자자와의 자금대여, 담보제공 등 내부거래를 지양할 것이라는 권고를 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주)청주방송과 (주)제주방송이 미이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청주방송은 자회사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20억원을 대여하였고, 제주방송은 자회사에게 총 3억 1,500만원을 대여하였으며, 본사 사옥과 부동산을 근거당으로 제공하였습니다. 17쪽 검토의견입니다. 대규모 자금대여는 유동성을 감소시켜 상환 지연 등 발생 시 재무적 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는 회계 자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양사에 행정지도를 추진하는 의견입니다. 처리 방안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향후 계획입니다. 본 보고안을 접수해 주시면 시정명령 사항에 대한 사전 통지를 거쳐, 위원회 안건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김중철 위원장

-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상근 위원

- 16쪽을 보시면 지역MBC의 경우 당기순손실이 굉장히 늘었습니다만 배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계 자문 말고 법률 자문을 한 번 받았으면 하는 것이, 이것이 혹시 배임에도 해당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걱정스럽습니다. 법률 자문을 한 번 하고, 다음 위원회 간담회했을 때 지역MBC의 경우 제가 알기로 MBC 본사가 100% 출자하는 곳도 있고 일부 지역사회들과 함께하는 것 같은데 그 지분 구조가 어떻게 되면서 그다음 배당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매출이 또 어떻게 되는지를 조사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중철 위원장

- 최수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최수영 위원

-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8쪽과 9쪽을 보면 'UHD 콘텐츠 최소 편성비율 미준수', 이것이 K·M·S를 포함해서 지역방송까지도 다 위반사항이 많은데 보니까 행정지도를 통해 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이번 하반기에 정책 재수립이 필요한 상황으로 '지상파 차세대 서비스 정책 방안'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실효적으로 나와야 할 것 같고, 또 이것이 반영이 시급히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정책이 시대적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위원회가 이런 부분들은 계획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하고 위원회에 보고해서 바로 집행될 수 있는 속도가 필요해 보이지 않나 싶어서 다시 추가 의견을 드립니다.

○ 김중철 위원장

- 답변해 주십시오.

○ 이기훈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조만간 관련 기존 현황과 정책 방향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해서 한 번 간담회를 통해 논의를 먼저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김중철 위원장

- 고민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민수 위원

- 계속되는 같은 내용의 말씀이라 이것을 또 해야 하나 싶기도 한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쪽을 보시면 "미이행 사업자에 대해서는 UHD 정책을 준수한 사업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 최소한의 행정조치가 필요하므로 행정지도를 추진한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지금

행정지도가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행 사업자와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를 다르게 취급하기 위해 행정지도를 쓴다는 이야기입니까?

○ **이기훈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사실은 어려운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준수한 사업자들이 있어서 그런 사업자들과 미이행한 사업자들을 구분해서 조금 더 행정청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 **고민수 위원**

- 그러려면 준수 사업자와 미준수 사업자가 결과적으로 차이가 나야 하는데 행정지도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차이점을 가져올 수 있는 수단이냐는 점입니다.

○ **이기훈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일반론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저희가 행정지도를 반복적으로 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또 이행이 안 됐을 때는 시정명령까지 가게 되는 과정을 통해 어느 정도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고민수 위원**

- 그런데 행정지도가 자발적 협조를 유도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라고 하는 사실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 **이기훈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 **고민수 위원**

- 그런데 행정지도를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시정명령이라는 방송평가에 감점요소로 들어가는 시정명령 불이행 처분으로 연결된다면 이것은 위법한 처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행정지도, 행정지도, 행정지도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정지도라고 생각하고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자발적 협조를 유도한다고 하지만 두 가지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사업자들이 협조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계속 강화시켜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사업자들은 한 척 하기 위해 또 무슨 서류작업을 해야 하고 이런 아무 실효성이 없는 것을 왜 반복적으로 할까? 그런데 그 근원으로 따져 올라가면 우리가 사업자에 대해 허가할 때 너무 불필요한 사항을 권고사항으로 붙이고, 또 조건으로 붙이다 보니까 그것이 이행됐는지 또 확인해야 하고, 확인하려다 보니까 하지 않은 곳에는 차별적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출발점 자체가 너무 무의미하고 실효성 없는 권고나 조건이 너무 많이 부관으로 붙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제에 우리가 사업자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계획을 새롭게 마련해야 하고, 그때는 이러한 권고를 위반했을 때 행정지도로 이어질 수 있는 실효성 없는 이런 내용들은 대폭 삭제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따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3쪽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재허가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조건으로 부과했는지 그 이유와 배경은 알 수 없으나, 제가 알고 있는 「방송법」의 내용에 비춰 보면 방송사업자 단위로 「방송법」은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허가를 하면서 국 단위로 조건을 부과했다는 것입니다. 법에 근거 없는 부관을 부과한 것입니다. 부담을 지운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고, 그 당시에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만약 그것이 위법한 부담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행정지도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직권 취소를 하든지 철회를 해야 합니다. 그것을 옛날에 부과했으니까 이것을 행정지도하겠다는 것은 법치행정에 반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김종철 위원장**

- 고민수 위원님께서 기본적으로 행정지도를 향후 사무처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 주셨고, 또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 맞게 재허가·재승인 등의 행정행위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론에 대해서도 관심을 환기시켜 주셨습니다. 이 사안은 2024년도 관련 사항이어서 기성의 질서를 기본적으로 존중해야 할 필요성을 저희가 도외시할 수 없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점검결과를 처리해야 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수 위원님 등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환기시켜 주셨듯이 사정변경에 따른 법 집행에 있어서 행정법상의 기본원칙들을 충실히 운용해서 부당하거나 혹은 극단적인 경우 위법할 수 있는 상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고, 향후 새로운 계획을 마련하거나 기준을 준비할 때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불필요한 조건이나 권고 부과 등에 대해 합리화할 수 있도록 사무처에서 각별하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기훈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알겠습니다.

○ **김종철 위원장**

- 혹시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나. 2025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 **김종철 위원장**

- <보고사항 나> “2025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웅현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 “2025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유, 추진경과, 평가개요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4> 시장획정 및 평가지표입니다. 단위 시장 획정은 방송산업 참여 주체 간 거래 등을 고려하여 유료방송시장, 방송채널거래시장, 방송영상콘텐츠거래시장, 방송광고시장 등 4개 단위 시장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획정

결과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입니다. <나> 평가지표도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별 주요 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가> 유료방송시장입니다. 시장 주요현황은 2024년 말 기준 전체 유료방송서비스 가입자는 3,631만 단자이며, 매출액은 7조 2,361억원으로 모두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증가율은 둔화되거나 정체된 상황입니다. 주요 분석결과입니다. 유료방송시장의 시장집중도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IPTV 3사 중심의 과점체제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이렇듯 유료방송시장의 집중도 상승에도 불구하고 유료방송 구독료 인상 효과는 OTT 경쟁 압력 등으로 인해 제한받고 있습니다. 시사점입니다. 유료방송서비스에 대한 OTT서비스의 대체 압력 증가에 따라 유료방송시장 경쟁분석 대상을 OTT를 포함한 플랫폼 전반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OTT 시장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가입자수, 관련 매출액 등 기초 자료 확보가 제한되어 설문조사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송미디어 시장 전반의 경쟁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OTT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합니다. <나> 방송채널거래시장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2024년 전체 방송채널제공 매출액은 1조 5,629억원으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요 분석결과입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방송채널사업자의 시장집중도는 유료방송사업자와는 달리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고려하면 대규모 유료방송사업자가 방송채널사업자에 대해 높은 수준의 협상력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최상위 방송채널 공급자도 상당한 수준의 협상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홈쇼핑방송매출액은 전년 대비 2.1% 감소하여 '22년부터 이어진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홈쇼핑송출수수료는 증가하고 있지만 2022년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시사점입니다. 유료방송시장 성장 정체에 따라 유료방송사업자의 콘텐츠 대가 지불 여력은 약화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반면, 방송광고시장 침체와 제작 단가 인상 등에 따른 방송채널 공급자의 콘텐츠 대가 인상 유인은 강화되고 있어 채널 대가 관련 분쟁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홈쇼핑방송매출액 감소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홈쇼핑송출수수료 분쟁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 발생 시 시청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다> 방송영상콘텐츠거래시장입니다. 시장 주요현황은 방송사업자의 전체 직접제작비는 2024년 2조 9,709억원으로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OTT 콘텐츠 비용의 경우 국내 사업자는 사업자별로 증감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넷플릭스의 경우에는 글로벌 전체 오리지널 콘텐츠 비용이 전년 대비 20.9%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주요 분석결과입니다. 방송사업자만 놓고 볼 때 수요 측면에서의 시장집중도는 낮은 수준입니다. 아래 보시면 OTT 자료가 제한되어 간접 자료인 드라마 제작건수로 방송과 OTT를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 OTT사업자를 포함할 경우에도 시장집중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최근 3년간 방송사업자 및 국내 OTT사업자의 국내 오리지널 드라마 공급 개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의 한국 드라마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사점입니다. 국내 사업자의 콘텐츠 수요는 위축된 가운데, 넷플릭스의 수요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넷플릭스에 대한 국내 제작거래 생태계의 의존도 심화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방송영상콘텐츠 거래시장은 2024년부터 방송과 OTT를 단일시장으로 확정하였으나, 가용 자료의 한계로 인해 포괄적이고 종합

적인 분석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OTT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방송광고시장입니다. 전체 광고시장 대비 TV방송광고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광고 비중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분석결과입니다. 방송광고시장은 시장집중도가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매우 경쟁적인 시장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이와 함께 OTT 서비스의 광고 요금제 가입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TV방송광고에 대한 경쟁압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사점입니다. 소비자의 시청 패턴 변화, 온라인 광고 성장 등으로 TV방송광고시장은 역성장을 지속하며 전체 광고시장 내 비중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넷플릭스, 티빙 등 방송영상콘텐츠 기반 OTT 서비스들의 광고 요금제 가입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TV방송광고에 대한 경쟁 압력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오늘 보고사항을 접수해 주시면 이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종철 위원장

-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상근 위원

- 말씀해 주셨습시다만 앞부분 전체적인 광고매출을 보면 방송사들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OTT 같은 경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방송보다는 OTT 쪽에 훨씬 역할이 중요해질 텐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시청률 조사가 법률적으로 약간 어려운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는 어려운 것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유관부서와 잘 상의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지 앞으로 저희가 어떠한 정책을 펴더라도 그 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정책을 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은 저희 유관부서라든지 다른 데와 협력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윤용현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 OTT 관련 시청점유율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철 위원장

- 최수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최수영 위원

- 이어서 비슷한 것인데 5쪽을 보시면 “OTT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고, 또 9쪽을 보면 “방송영상콘텐츠거래시장의 정밀한 분석을 위해 OTT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선언적 의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제도 개선이나 제도적 장치, 지금 우리 위원회가 고민하거나 대안적인 제도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있으면 밝혀 보십시오.

○ **윤용현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 지금 경쟁상황평가를 할 때 방송사업자와 IPTV사업자는 자료 제출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법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방송법」·「IPTV법」에 있는 IPTV사업자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기술되어 있는데, 지금 OTT가 별도로 「전기통신사업법」에 있는데 OTT사업자도 「방송법」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넣으면 어떨까, 지금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수영 위원**

- 입법사항이라는 것입니까?

○ **윤용현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 그렇습니다.

○ **최수영 위원**

- 이 2개 다 제도적 장치 마련도 그렇고 제도개선도 필요하다?

○ **윤용현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 예.

○ **최수영 위원**

- 입법사항이면 위원회가 이른바 부처입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 **곽진희 방송기반국장 직무대리**

- 정부입법으로도 가능하고, 다만 정부입법 추진기간이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이것은 의원입법으로 하는 부분도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 **최수영 위원**

- 이것이 필요하다, 제도적 장치 마련이 있어야 한다고 자꾸 이야기해 봐야 이것은 실효적인 강제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솜방망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곽진희 방송기반국장 직무대리**

- 「방송법」에 경쟁상황평가에 관한 법 규정에 대해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자료 제출 규정이 있습니다. 그 조항을 인용해서 경쟁상황평가에 맞게끔, 그런 자료를 받을 수 있게끔 규정을 개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최수영 위원**

- 속도를 내달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곽진희 방송기반국장 직무대리**

- 알겠습니다.

○ **김종철 위원장**

- 이 보고는 경쟁상황평가에 대한 것이고 사무처에서 별도로 예를 들어 미디어 통합 법제라든가 큰 과제 프로젝트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위원회 활동이 정상화되면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과 고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들을 마련하도록 하고, 또 준비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제안들도 검토할 수 있도록 준비를 사무처에서 해 주실 것으로 믿고, 그 계획은 잡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고민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민수 위원**

- 최수영 위원님과 같은 맥락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고사유에 보면 두 가지 법률의 해당 조항들에 따라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가 방송시장의 공정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한다, 그래서 결과를 보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윤용현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 예.

○ **고민수 위원**

- 그런데 공정경쟁환경이 조성됐느냐, 안 됐느냐를 지금 이 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까?

○ **윤용현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고민수 위원**

- 그러면 환경이 아니라고 하면 조성을 위한 액션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제도가 시작된 지 꽤 오래 지났지 않습니까?

○ **윤용현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 예.

○ **고민수 위원**

- 그런데 불공정하다, 쏠려 있다. 예컨대 지금의 상황에서 기존 방송사업자들의 광고가 전부다 OTT로 넘어가고 디지털 광고로 넘어가 있다, 그러면 공정경쟁상황이 아닌데 조성을 위한 뭔가 대책을 마련해 줘야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것을 예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시지탄이 있지만, 너무 늦었지만 이렇게 확인해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 말고, 최수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법안으로 만들어서 이런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 방안들은 미리미리 서둘러 만들어서 입법단계로 이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윤용현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 알겠습니다.

○ **김종철 위원장**

- 윤성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윤성욱 위원**

- 우선 보고를 열심히 해 주셨는데 요약적으로 우리가 전년도에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했을 때와 이번 보고서에서의 차이점과 차기에 시장평가할 때 어떤 내용들을 반영해서 개선할지 먼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윤용현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 매년 경쟁상황평가위원회에서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들을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2025년도의 경우에는 OTT 광고요금제가 활성화되는 점을 고려해서 광고주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밟아서 방송광고와 OTT 광고상품 특성과 광고주 인식 등 분석을 별도로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홈쇼핑송출수수료 관련 분쟁이 계속 찾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료방송시장과 TV 홈쇼핑시장에서의 변화 등 송출수수료 협상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점검했습니다. 차기에 중점적으로 봐야 할 사항들은 경쟁상황평가에서 별도로 논의가 되겠지만, 최근 이슈가 되는 것들은 패스트(FAST: Free Ad-supported Streaming TV)가 도입되면서 아직 국내에서는 활성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향후 FAST가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기존의 유료방송과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이것이 활성화됐을 경우 어떻게 경쟁상황에 반영되어야 할지와 현황들을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철 위원장**

- 윤성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윤성욱 위원**

- OTT 자료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설문조사나 여러 가지 기법을 통해 보완하시는 것은 어느 정도 의미도 있고 고생을 하셨는데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이런 것입니다. 홈쇼핑송출수수료도 중요하고, FAST가 등장하면서 시장상황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하는 이유는 우리가 시장에서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이 평가보고서를 보고 '한국의 미디어 시장의 다양성이 보장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파악되거나 아니면 '독점현상이 나타나고 있구나', '정책이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이 도드라져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 가지 요인은 지금 유료방송시장, 방송채널거래시장, 방송영상콘텐츠거래시장, 방송광고시장 이렇게 구분해 왔고, 이것이 우리가 초기에 2010년부터 적용해 왔던 것이 아닙니까?

○ **윤용현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 예.

○ 윤성욱 위원

- 이렇게 시장을 획정하는 것이 적합한지도 한 번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보고해 주신 바에 의하면 방송광고시장이 매우 경쟁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방송광고 안에서만 보면 다 어려워지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분배가 되어 있는 것이지, 이 미디어 광고시장을 어디까지 범위로 획정했느냐에 따라 굉장히 독점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이것은 굉장히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것 저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경쟁상황평가라는 것은 우리가 미디어 시장 안에서의 독점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일어나고 있지 않은지 반드시 봐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획정 이런 부분들을 전향적으로 실무진에서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평가하는 것들이 의미 있게 나오고 그 의미 있는 분석에 의해 우리가 적절하게 시의성 있게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더 애써주셨으면 합니다.

○ 윤용현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 말씀하신 대로 시장획정에서 시장집중도를 분석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그 시장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시장집중도를 수치화해서 나타내는 것보다 오히려 더 낫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는 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진희 방송기반국장 직무대리

- 시장획정과 관련해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방송시장만 획정할 때와 OTT까지 포함해서 시장을 획정했을 때 집중도가 완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송영상콘텐츠거래시장에서 분석할 때 '24년도에는 OTT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자료를 보시면 방송영상콘텐츠거래시장에서 OTT가 포함되면서 굉장히 글로벌 OTT는 제작비 투자와 콘텐츠 구매비용이 굉장히 높은 데 비해 국내 OTT는 굉장히 감소하고 있고, 이런 굉장히 큰 차이가 이번에 드러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료방송시장에 있어서도 IPTV가 독점이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OTT를 구매할 것이냐?” 설문조사했을 때 10% 인상되면 OTT로 가겠다고 이미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구조는 OTT로 넘어가는 것이 이번 조사결과에서 나왔습니다. 특히 채널거래시장에서 의미 있는 결과는 3년 동안 OTT 가입한 사람을 대상으로 했을 때 “가입 이후 TV에 대한 시청시간이 얼마나 감소했느냐?” 했을 때 3년 동안 21%나 감소하는 엄청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방미통위가 방송을 중심으로 이제까지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이렇게 시청시간이 OTT로 다 넘어가고 광고시장도 OTT로 간다면 저희 정책도 변화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는 측면에서 이 결과가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 윤성욱 위원

- 국장님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것들이 도드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OTT사업자에 혹시 넷플릭스나 이런 플랫폼만 포함된 것입니까, 아니면 유튜브까지 포함되는 개념으로 하셨습니까?

○ **윤용현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 지금 구독형 OTT만 중심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 **윤성욱 위원**

- 그러니까요. 그것도 전문가들에게 두루두루 의견을 들어보시고, 우리가 지금 구독자형, 넷플릭스형의 OTT 플랫폼만으로 시장을 획정할 것인지, 유튜브까지 확장해서 볼 것인지에 따라서도 굉장히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전문가들에게 두루두루 의견을 수렴하셔서 실질적으로 경쟁관계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윤용현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

- 알겠습니다.

○ **김종철 위원장**

-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평가가 말 그대로 평가를 위한 평가로 그쳐서는 안 되고 정책에 반영되어서 우리 미디어 생태계의 개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디어 주권을 실질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미디어 생태계의 변화가 굉장히 극심하므로 이 극심한 변화들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사무처에서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인식이나 태도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들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지점에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종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처에서 지금까지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개선 노력도 해 주셨지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저희가 새로 출범한 마당에 그런 변화에 걸맞게 향후의 평가도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접수하겠습니다.

8. 기 타

○ **김종철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의결안건> 2건, <보고안건> 2건 모두 총 4건의 안건은 이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혹시 준비된 것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도 2시간 6분에 걸쳐 연속으로 열띤 회의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가 개정 방송법에 따른 사장추천위원회 제도와 관련해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관련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법리적인 문제들을 열띤 논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의 이런 법과 원칙을 중시하고 그리고 현실적 상황변화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들이 우리 위원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는데 조금은 기여하게 되지 않을까, 혹은 기여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면 차기 회의는 사정에 따라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9. 폐 회

○ 김종철 위원장

- 오늘 안건 논의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0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 07분 폐회】